#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30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조정훈·김미애·최수진

김대식 • 인요한 • 김용태

유상범 • 정성국 • 박준태

서명옥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. 또한,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 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.

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및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,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에 파견하고,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55조의5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#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장제1절에 제5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5조의5(파견근무) ① 사립학교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)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,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,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,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·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권한은 학교법인의 정관(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)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(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)는 파견 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원을

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·기간·절차, 파견근무 중 복무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55조의5(파견근무) ① 사립학교
	(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
	학교는 제외한다) 교원의 임용
	권자는 교육활동의 교류, 업무
	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
	연수,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
	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교원을
	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
	단체,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
	외의 교육기관 연구기관에 일
	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
	있으며, 교육활동의 교류와 원
	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
	필요하면 교육공무원을 파견받
	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	②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
	권한은 학교법인의 정관(사인
	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
	그가 정하는 규칙을 말한다)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
	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	③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(제2
	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학

교의 장을 포함한다)는 파견
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 목적
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으면 해
당 교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
소속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.
④ 제1항에 따라 소속 교원을
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교육공무
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
경우 그 사유・기간・절차, 파
견근무 중 복무, 그 밖에 필요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다.